

2026

# 공인노무사 노동법 2

엠북 노동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
- ★ 1시간 44분 완성

도서명 : 공인노무사 노동법2

ISBN : 979-11-7393-209-0

발간일 : 2026-03-05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mailto:by4782@gmail.com)

정가 : 15,000원



# 공인노무사 노동법2

## [목차]

제1편 노동조합법(p4)

제2편 근로자참여법(p97)

제3편 노동위원회법(p118)

제4편 공무원노조법(p161)

제5편 교원노조법(p182~196)

##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1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법)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약어]

노조는 노동조합

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사용자등은 사용자, 사용자단체

## 제1장 총칙

1~4조

### 1. 목적

-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 예방/해결
- 산업평화 유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2. 정의

가. 근로자는 임금/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 직업 종류 불문

나.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 (26년 3월 10일 시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 사용자로 봄

**다.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해 구성원인 사용자에게 조정, 규제할 권한 가진 사용자의 단체

**라. 노동조합(이하 노조)**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 단결해

근로조건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 연합단체

- 다음은 노조아님

1) 사용자나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참가 허용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음

3) 공제/수양, 복리사업만 목적으로 함

4) 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 허용(26년 3월  
10일 삭제)

5) 주로 정치운동 목적

마.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노조와

사용자등)간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대우등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다음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상태(26년 3월 10일 시행)

- 1)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
- 2) 근로/휴게시간, 휴일, 휴가
- 3) 징계/해고 사유, 중요한 절차
- 4) 안전보건/재해부조

(비고) 주장의 불일치는 당사자간에 합의  
노력을 계속해도 더이상 자주 교섭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것

**바.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 관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

###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가. 사용자는 법에 따른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조 활동(26년 3월 10일 부터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손해 입은 때 노조나 근로자에 배상 청구못함

나. 신설(26년 3월 10일 시행)

1)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근로자의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근로자는 배상 책임 없음

2)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조 활동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 인정시 손해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다음에 따라 책임비율  
정함

- 노조에서의 지위/역할
-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정도
-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 임금 수준, 손해배상 청구금액
- 손해 원인/성격
-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

있는 사항

3) 배상의무자인 노조/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 청구 가능

-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해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와 정도

## 판단 요

4)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조 활동 인한 손해 배상 책임 없음

5) 사용자는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 방해,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못함

## 4. 책임의 면제 (신설, 26년 3월 10일 시행)

-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조 활동 인한 노조/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 면제 가능

5. 형법상 **정당행위**는 노조가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행위로서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한 정당한 행위에 적용

- 어떠한 경우도 폭력/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면 안됨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2장 노동조합

5~28조

### 제1절 통칙

#### 1. 노조의 조직/가입/활동

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 조직, 가입

-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로 정함

나) 사업, 사업장 종사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조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내 사업, 사업장내 노조 활동 가능

다)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봄

## 2. 법인격의 취득

가) 노조는 규약에 의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으로 하려면 등기 요

나) 법인인 노조에 대해 법에 규정된 것

이외는 민법(사단법인) 적용

### 3. 노조의 보호요건

가)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 아니면 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못함

나) 상기 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면 안됨

다) 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 아니면 노조 명칭 사용못함

### 4. 조세의 면제

- 노조에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에 따라 조세 부과안함

### 5. 차별대우의 금지

- 노조 조합원은 어떤 경우도 인종, 종교, 성별,